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지침 안내 및 협조요청

1. 귀 기관의 코로나19(COVID-19) 예방 및 관리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(1.16)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 - 적용 기간 : 2021년 1.18(0시) ~ 2021년 1.31(24시)까지
 - 대상 지역 : 14개 시도(수도권 외 지역)

< 주요 지침 >

①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

- 대상 시설 :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홀덤펍, **파티룸**

* 밀줄 친 조치는 완화 불가

- 조치 내용 : **집합금지**

붙임 1.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

②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

- 대상 시설 :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

- 조치 내용 : **방역지침 의무화**

붙임 2.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③ 식당·카페 방역지침 의무화

○ 대상 시설 : 식당 · 카페

○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 3. 수도권 외 지역 식당 · 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④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

○ 대상 시설 : 실내체육시설, 실외 겨울스포츠시설, 백화점 · 대형마트, 직업훈련기관 · 학원 · 교습소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목욕장업, 영화관, 공연장, PC방, 오락실 · 멀티방 등, 독서실 · 스터디카페, 놀이공원 · 워터파크, 이 · 미용업, 백화점 · 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(300m² 이상)

* 밀줄 친 조치는 완화 불가

○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 4.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⑤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

○ 대상 시설 :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
- 리조트, 호텔, 게스트하우스, 농어촌민박 등

* 밀줄 친 조치는 완화 불가

○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 5.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⑥ 모임 · 행사

○ 조치 내용 :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, 그 외 모임 · 행사 100인 이상 금지

* 밀줄 친 조치는 완화 불가

-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

-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(예: 교실)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

* 전시회 · 박람회 ·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100인 기준 미적용

붙임 6. 수도권 외 지역 모임 ·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⑦ 고위험사업장

- 대상 시설 :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
-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 8.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⑧ 직장근무

- 공공기관은 기관별·부서별 적정비율(예: 전 인원의 1/3) 재택근무 등 실시
 - * 치안, 국방, 외교, 소방, 우편, 방역, 방송, 산업안전,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
-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
- 회식·대면회의·출장 자제
- 민간 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 형태 개선 권고

⑨ 그 외

- 종교시설
 - 방역지침 의무화
- 교통시설 : 대중교통 시설(국제항공편 제외)
 - 방역지침 의무화
- 국공립시설
 - 소관 부처·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
 - 경륜·경정·경마장·카지노는 운영 중단,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%로 제한 원칙
 - * 부처·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, 방역 관리상황,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
- 사회복지 이용시설
 - 이용인원의 50% 이하로 제한(최대 100명)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
 -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
 - 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
- 스포츠관람
 - 10% 이내로 관중 입장 가능

3.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이 아닌 연말연시 특별대책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(**밀출 친 사항**)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이 불가하며, 강화된 조치만을 시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또한, 아래와 같은 핵심 방역 조치는 각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없고,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된 경우에만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를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.

- 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
- ② 유흥시설 5종, 홀덤펍,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
- ③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 제한·중단 조치
- ④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
- 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, 백화점·대형마트, 숙박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4. 각 협단체에서는 동 자료(붙임)를 **홈페이지에 공지하고, 이메일, SNS 등을 통하여 신속히 소속 기업에 전파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 또한,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,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
- 1.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.
 - 2.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
 - 3. 수도권 외 지역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
 - 4.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
 - 5.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
 - 6.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
 - 7.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
 - 8.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
 - 9.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 끝.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

수신자 한국산업단지공단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중소기업중앙회, 전국경제인연합회, 대한상공회의소, 한국경영자총협회, 한국무역협회, 중견기업연합회, 업종별 협·단체

주무관 **박혜수** 과장 **니성화** 전결 2021. 1. 18.

협조자

시행 산업일자리혁신과-67 (2021. 1. 18.) 접수

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, (어진동) / <http://www.motie.go.kr>

전화번호 044-203-4222 팩스번호 044-203-4722 / oyeah5@motie.go.kr / 대국민 공개